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30.(목) 11:00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66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2. (수정안 12. 29.)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 (수정안 12. 29.)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07,717,384	707,717,384	545,733,305	12,416,344	51,465,113	98,102,622	- <35,762,867>
일반회계	695,665,460	695,665,460	532,501,288	12,416,344	54,124,013	96,623,815	- <35,262,867>
특별회계	12,051,924	12,051,924	13,232,017	-	-2,658,900	1,478,807	-
의료급여	655,976	655,976	503,592	-	76,544	75,840	-
주민소득	642,392	642,392	294,400	-	347,992	-	-
주차장	10,753,556	10,753,556	12,434,025	-	-3,083,436	1,402,967	- <500,000>

※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4. 교통건설국 명시이월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0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비
합계 : 3개 부서 / 6건		10,088,333	3,408,723	820,000	270,856	2,317,867
주차관리과 (1건/500,000천원)	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관리	630,500	500,000	500,000		
건설행정과 (1건/1,084,011천원)	독산로 지중화 사업	4,536,252	1,084,011			1,084,011
도로과 (4건/1,824,712천원)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1,815,060	541,712		270,856	270,856
	신속한 제설대책	3,106,521	963,000			963,000
	급경사지 개선공사	200,000	200,000	200,000		
	보안등 노후 점멸기 교체	120,000	120,000	120,000		

5. 검토의견

-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6건 34억 872만 3천원으로
 - 주차관리과 : 1건 5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계 (1건)		630,500	500,000	500,000	0	0	
1	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관리	630,500	500,000	500,000			[집행시기 미도래] '21. 11.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

-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1건 5억원은 특별교부금 하반기 결정으로
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되며

- 건설행정과 : 1건 1,084,011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계 (1건)		4,536,252	1,084,011	0	0	1,084,011	
1	독산로 지중화 사업	4,536,252	1,084,011			1,084,011	[집행시기 미도래] 실시설계과정의 지연 및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과의 병행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진행 지연

· 독산로 지중화사업 1건 10억 8,401만 1천원이 실시설계과정의 지연 등으로 이월

- 도로과 : 4건 1,824,712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 고 (사유)
		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
합 계 (2건)		5,241,581	1,824,712	320,000	270,856	1,233,856	
1	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	1,815,060	541,712		270,856	270,856	[연도 내 지출불가] 현 시점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진행중으로, 이의재결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으로 보상금 미확정
2	신속한 제설대책	3,106,521	963,000			963,000	[집행시기 미도래] 겨울철 동절기 공사시 시설물 품질저하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이월하고자 함.
3	급경사지 개선공사	200,000	200,000	200,000			[집행시기 미도래] '21. 12. 27.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 및 계 약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4	보안등 노후 점멸기 교체	120,000	120,000	120,000			[집행시기 미도래] '21. 12. 27.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 및 계 약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
-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등 4건 18억 2,471만원이 명시이월되며
-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이 보상금 미확정으로 22년 협의 후 집행 예정으로 이월
-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 9억 6,3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어려움으로 이월
- 급경사지 개선공사, 보안등 교체 사업은 12월말 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

○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1. 12. 21.] [법률 제18585호, 2021. 12. 21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